KIEP
세계경제 포커스
World Economy Focus
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2021년 5월 25일 Vol. 4 No. 27 ISSN 2635-5981

#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

**오태현**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(asroc101@kiep.go.kr, Tel: 044-414-1159)

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
T.044-414-1114 F.044-414-1001 • www.kiep.go.kr

## 차 례

1. 배경
2. 입법안 주요 내용
3. 평가 및 전망

## 주요 내용

▶ EU 집행위원회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입법안을 발표함(2021. 4. 21).

- EU는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, 이번에 발표된 입법안은 위장친환경행위(Greenwashing)를 차단하면서 EU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.
-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은 ① EU 기후 위임법률 ②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③ 6개의 위임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됨.

▶ [EU 기후 위임법률(Delegated Act)] EU 분류체계(EU Taxonomy)상 기후변화 완화(Mitigation) 및 적응(Adaptation) 목표와 연관된 경제활동 여부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구체화·단순화·국제협력 등이 강조됨.

- 기후 관련 환경적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기준의 기술적 유용성과 정확성에 대한 다양한 설명 제시, 판단기준의 단순화와 유연한 적용을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 경감, EU 분류체계 기준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등이 강조됨.

▶ [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(CSRD)] 기존 비재무 보고지침을 보완·개정하면서 적용대상 확대, 보고 표준 도입, 공시에 대한 감사, 지속가능성 정보의 디지털화 등이 포함됨.

-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(CSRD: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)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과(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70만 유로 이하를 제외한 모든 기업 대상, 非EU 법인의 자회사 및 EU에 상장된 非EU 법인 포함) 공시정보(지속가능목표 달성 계획, 기업이 ESG에 미치는 영향)가 확대됨.
-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과 함께 EU의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.

▶ [6개 위임법률 개정안] 집합투자, 대체투자자, 보험사 및 재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, 금융상품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함.

▶ 한국정부도 2021년 중 국내 산업계 및 금융업계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형 분류체계(K-Taxonomy)를 마련할 계획이며,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친환경성 여부를 두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노력이 요구됨.

- EU 집행위원회도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을 발표하면서 이해당자사들간 이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친환경성 판단을 보류함.

# 1. 배경

■ EU 집행위원회(European Commission, 이하 EU 집행위)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입법안을 발표함(2021. 4. 21).[1)]

-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은 투자자 및 금융기관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술과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담고 있음.

○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, EU 시민의 복지와 건강 개선, EU 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차원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.

- EU 집행위가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ESG(Environmental, Social and Governance)와 관련하여 기업과 금융기관에 EU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규제를 제시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.

■ EU는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, 이번에 발표된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은 위장친환경행위(Greenwashing)를 차단하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음.

**표 1. 유럽 지속가능금융 규제 추진 현황**

| 시기 | 내용 |
|---|---|
| 2014. 10 | EU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지침(NFRD) 제정 |
| 2018. 03 | EU 지속가능금융 이행계획 발표 |
| 2019. 12 | EU 집행위, EU의 새로운 성장전략 및 기후대응 전략으로 '유럽그린딜' 발표 |
| 2020. 03 | 유럽기후법 제안을 통해 2050년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부여 |
| 2020. 07 | EU 분류체계(Taxonomy) 규정 발표 |
| 2021. 03 |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(SFDR) 발효 |
| 2021. 04 | 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 발표 |

자료: Kiwoom Global ETF Issue(2021) 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.

# 2. 입법안 주요 내용

## 가. EU의 분류체계상 기후 위임법률(Delegated Act)

■ EU 집행위는 분류체계 규정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, 이번 기후 위임법률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.[2)]

1) European Commission(2021), EU Taxonomy,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, Sustainability Preferences and Fiduciary Duties: Directing finance towards the European Green Deal, COM(2021) 188 final.
2) European Union(2020), Regulation (EU) 2020/852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, and amending Regulation (EU) 2019/2088.

- EU는 분류체계(EU Taxonomy) 규정을 통해 6개 환경목표 및 4개 판단기준을 제시함.
  - [6개 환경목표] ① 기후변화 원칙(온실가스 감축)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
  - [4개 판단기준] ①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②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(DNSH: do no significant harm) ③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(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,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등) 준수 ④ 경제활동별 기술 선별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활동 식별 및 개발
- EU 분류체계(EU Taxonomy)상 선별기준을 통해 기업 및 금융기관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이행해야 함.
  - EU 분류체계는 [그림 1]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와 지속가능금융 공시에서 고려해야 하는 경제활동의 친환경 여부 판단기준을 제시함.

**그림 1. EU 분류체계가 지속가능금융에 미치는 영향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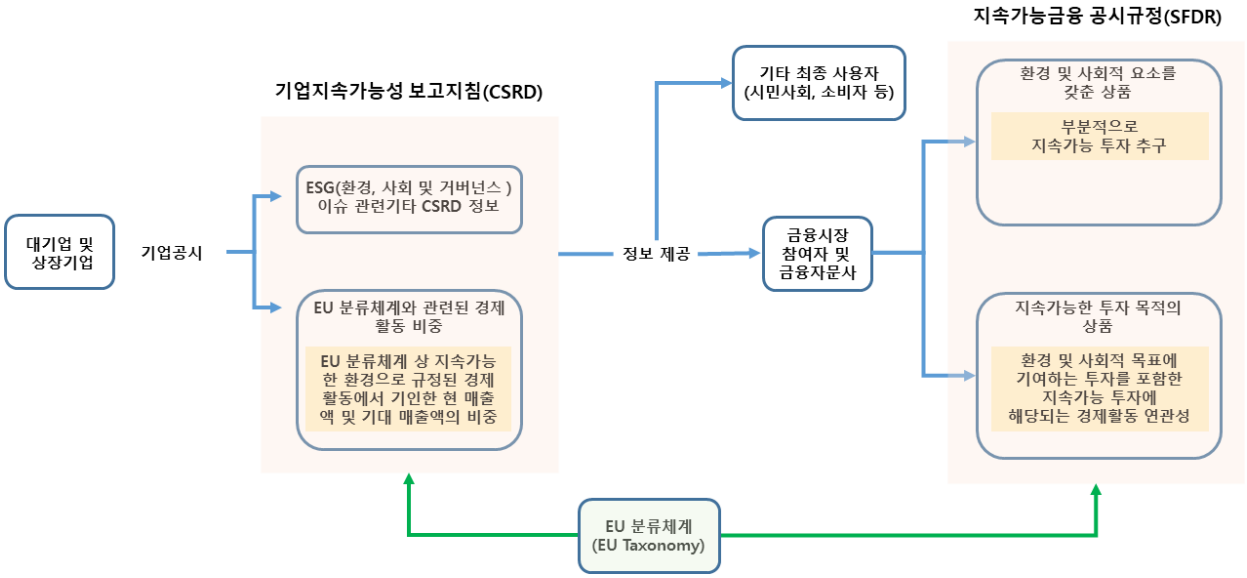


주: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(CSRD)과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(SFDR)은 pp. 5~6 참고.
자료: European Commission(2021).

■ 기후 위임법률은 어떤 경제적 활동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실질적으로 더 기여하는가를 명확히 규정하고, 판단기준의 단순화 및 기준의 확대 등을 제시함.

- 기술전문가그룹(TEG: Technical Expert Group)의 기술 선별기준(TSC: Technical Screening Criteria) 제안을 바탕으로 EU 집행위는 3가지 분야별 조치를 시행 또는 마련할 계획임.
- [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] EU 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정의함.[3)]
  - 기업들은 EU 분류체계를 근거로 경제활동의 친환경 여부를 결정하며,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, 금융기관들도 관련 금융상품을 설계할 수 있음.

3)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활동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.

○ EU의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(RRF: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)는 EU 분류체계상 '다른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(DNSH)'는 조건을 준용하며,[4] 결속정책(Cohesion Policy)의 기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DNSH를 고려해야 함.

- [판단기준 및 활용] 판단기준의 기술적 정확성과 유용성을 위해 다양한 설명을 제시하고,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판단기준을 단순화 및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며, EU와 회원국 간 보조성 및 권한에 대한 명확성을 부여함.
- [EU 분류체계 확대] 분류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 국제플랫폼(IPSF: 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), G7/20, 금융안정위원회(FSB) 등과 협력하기로 함.

○ 지속가능금융 국제플랫폼은 2019년 10월에 EU가 아르헨티나, 캐나다, 칠레, 인도, 케냐, 모로코와 공동으로 출범시켰으며, 민간자본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운용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.[5]

## 나.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(CSRD)

■ EU 집행위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(CSRD: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)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한 기존 비재무 보고지침(NFRD: Non-Financial Reporting Directive)을 보완·개정하면서 지속가능성 공시의무를 강화함.

- 비재무 보고지침과 비교하여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은 적용대상 확대, 공시에 대한 감사의무 및 상세 보고표준 도입, 지속가능정보의 디지털화 등을 제시함.

○ [적용대상 기업 확대] 의무공시 기업이 4만 9,000개로 확대(기존 '500인 이상' 기준 삭제에 따라 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70만 유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기업 대상)되었으며, 특히 非EU 법인의 EU 자회사 및 EU에 상장된 非EU 법인도 적용을 받게 됨.

* 비재무 보고지침은 500인 이상 상장법인 및 금융기관 등 1만 1,700개소를 대상으로 기업활동이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함.

○ [보고 정보] 기업은 ①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② ESG 측면에서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③ 이사회의 역할과 다양성 등을 보고해야 하며, 만약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함.

○ [지속가능성 보고 감사의무] 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된 검증기관이 이를 감사하도록 하며, 회원국은 회계감사기관 이외의 업체를 선택할 수 있음.

○ [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도입] 유럽금융보고자문그룹(EFRAG: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)이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안을 마련한 후 2022년 10월 31일까지 위임법률 형태로 채택할 계획임.[6]

* 보고 표준은 유럽그린딜의 목표와 투자자들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며, 향후 기후 관련 금융공시 작업반(TCFD: Task Force on Climate-related Financial Disclosures)을 통해 국제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의 통합을 목표로 함.[7]

○ [지속가능성 정보의 디지털화] 기업은 재무제표와 경영보고서를 XHTML 방식으로 작성하고, 디지털 분류시스템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에 'tag'를 달아야 하며, 디지털 분류시스템은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과 함께 마련될 예정임.

---

4) European Union(2021), Regulation (EU) 2021/241 Establishing the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.
5) 지속가능금융 국제플랫폼의 회원국: EU, 아르헨티나, 캐나다, 칠레, 중국, 홍콩, 인도, 인도네시아, 일본, 케냐, 모로코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세네갈, 싱가포르, 스위스, 영국.
6)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에는 ESG 관련 정보가 포함될 예정임.
7) TCFD는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전위원회(FSB: Financial Stability Board)에서 2015년 12월에 발족시킨,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임.

- 영향평가보고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에 따라 대상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12억 유로의 초기 이행비용과 함께 매년 36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.[8)]
  - ○ EU 집행위는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함.

**글상자 1. 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(SFDR)[9)]**

□ 2021년 3월 10일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(SFDR: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)이 공식 발효

- SFDR은 2018년에 EU가 발표한 지속가능금융실행계획(Action Plan: Financing Sustainable Growth)에 따라 발표되었으며, 금융의 지속가능성 분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

□ SFD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- [적용 대상] 금융시장 참가자 및 자문사
- [이행과정]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고려 여부를 사전 계약문서를 통해 공시
- [의무공시 항목] 유럽은행감독청(EBA), 유럽보험연금감독청(EIOPA), 유럽증권시장감독청(ESMA)으로 구성된 합동유럽감독위원회는 기업, 국가, 부동산자산에 대한 투자 분야의 18개 의무공시 항목 초안을 제시[10)]
  - ○ [기업] ① 온실가스 ② 탄소발자국 ③ 투자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집약도 ④ 화석연료 분야 기업과 연관성 ⑤ 비재생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중 ⑥ 기후 분야 에너지 소비 집약도 ⑦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 ⑧ 폐수 방류 ⑨ 유해 폐기물 비율 ⑩ 유엔글로벌팩트 원칙 및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위반 ⑪ 유엔글로벌팩트 원칙 및 OECD 지침 준수 모니터링 ⑫ 조정되지 않은 성별 임금격차 ⑬ 이사회 내 성별 구성 ⑭ 논란이 되는 무기(대인지뢰, 화학무기 등)에 대한 노출 정도
  - ○ [국가] ⑮ 투자대상국의 온실가스 집약도 ⑯ 국제협약 및 국제법을 위반한 투자대상국 비중
  - ○ [부동산자산] ⑰ 화석연료와 부동산자산의 연관성 ⑱ 비효율 에너지 부동산자산과의 연관성

## 다. 기존 6개 위임법률 개정안

■ 6개 위임법률 개정안은 투자사, 금융상품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함.[11)]

- [투자 및 신탁사의 지속가능성 강화] 금융기관이 투자가치 평가에서 자연재해 피해와 같은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함.
  - ○ 집합투자(UCITS: Undertakings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), 대체투자자(AIFMs: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), 보험사 및 재보험사 등에 적용됨.

8) European Commission(2021), The Impact Assessment Accompanying the CSRD Proposal.
9) European Union(2019), Regulation (EU) 2019/2088 on sustainability-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.
10) Joint Committee on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(2021), Final report on draft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.
11) European Commission(2021), ① Commission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10/43/EU ②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(EU) No 231/2013 ③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(EU) 2017/2358 and (EU) 2017/2359 ④ 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amending Delegated Directive (EU) 2017/593 ⑤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(EU) 2017/35 ⑥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(EU) 2017/565.

- [지속가능성 평가] 고객의 투자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시 자문사는 고객의 지속가능성 선호도, 위험손실 수용역량 등을 평가하며, 유럽증권시장감독청(ESMA)은 비자문서비스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.
- [금융상품의 거버넌스 규칙] 모든 금융상품 제조사 및 자문가는 금융상품 감독 및 거버넌스에서 지속가능성 요소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목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.

## 3. 평가 및 전망

■ EU의 분류체계,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지속가능금융 기존 위임법률 개정안을 통해 EU는 지속가능한 금융시장을 조성함으로써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평가됨.

- EU 기후 위임법률은 2021년 5월 말까지 공식 채택하고,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.
- 기업지속가능성 보호지침은 2022년까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합의할 경우,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을 마련하여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임.
- 6개 위임법률 개정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검토와 시장 참여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10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.

**그림 2. EU의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향후 스케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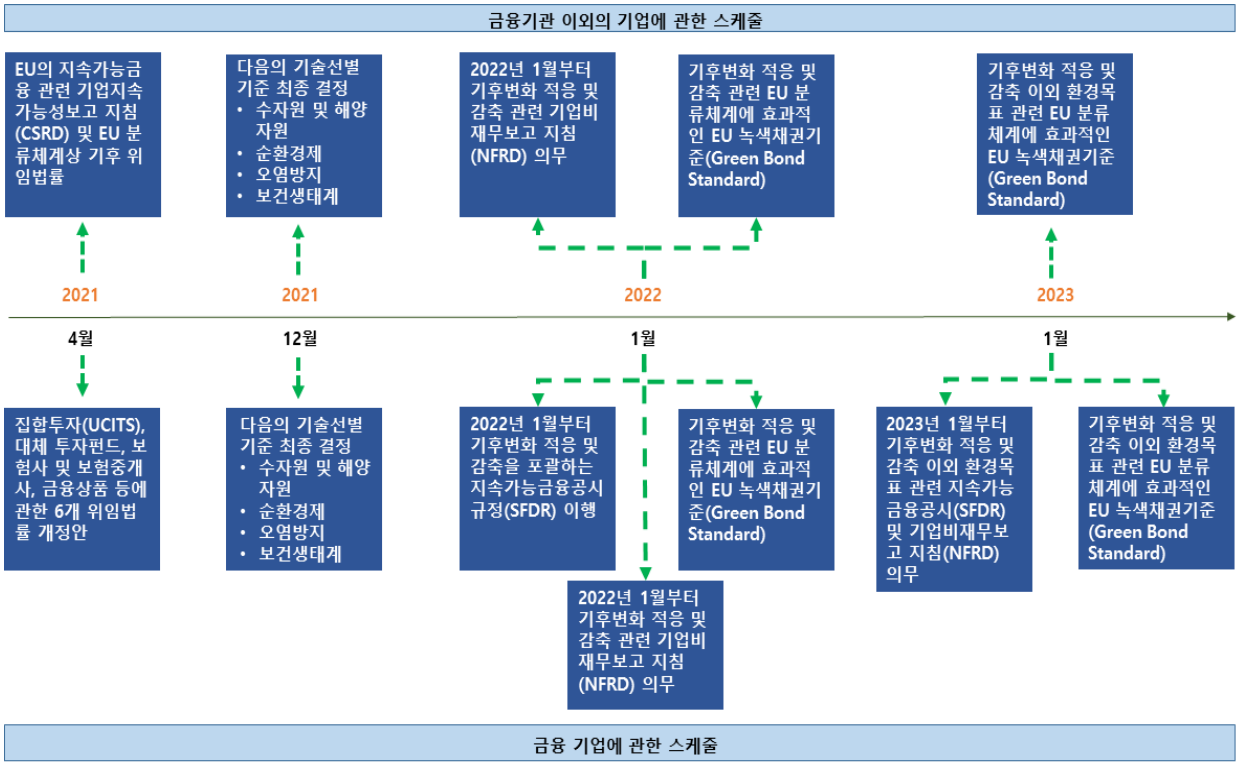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EY(2020).

■ 한국정부도 2021년 중 EU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 및 금융산업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한국형 분류체계(K-Taxonomy)를 마련할 계획이며, EU의 분류체계 및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은 향후 한국의 녹색금융 제도를 마련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큼.

- 최근에 공개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.

○ 녹색활동에 대한 기준이 엄격할수록 산업계와 금융계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, 원활하게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전에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.

**표 2. 한국형 녹색분류체계(초안) 주요 내용**
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▪ 녹색분류체계 대상인 10대 분야, 81개 경제활동 도출(2020년 11월)<br>▪ 분류체계의 경우 EU, ISO, 중국 등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친환경 제조업·발전업·건설업·운송업 등 선정 |
| 기술적 기준 | ▪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에 대한 기술적 기준(threshold)을 단계적으로 마련 |
| 환경법규 | ▪ 위장친환경행위(Greenwashing)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활동 분야별로 준수해야 할 환경법류를 구체화 |

자료: 금융위원회, 환경부(2021), 「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(안)」.

■ EU 집행위는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대한 친환경 분류 결정을 보류했으나, 2021년 중 연구결과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[12]

- 원자력과 천연가스 모두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, 분류체계상 친환경성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.

○ 남유럽 및 동유럽 일부 국가들은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친환경 또는 전환기 투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, 프랑스에서도 '원자력은 녹색기술'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.

- EU 집행위는 EU 공동연구센터(JRC: Joint Research Centre)에서 작성한 「원자력이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지 여부에 관한 기술보고서」 초안을 2개의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함.[13]

○ 방사능 보호 및 폐기물 관리 관련 전문가 그룹(National experts on radiation protection and waste management) 및 보건·환경·과학적 위험 분과위원회 전문가 그룹(Experts on environmental impacts from the 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, Environmental and Emerging Risks)이 JRC 보고서 초안을 검토

- 천연가스의 경우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투자(transition investment)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, 천연가스 자체가 친환경적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존함.

○ EU 집행위는 천연가스의 친환경성은 엄격한 조건(발전 및 냉난방은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히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 동반되는 경우)하에서만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음.[14] KIEP

12) Euractiv(2021. 4. 16), "LEAK: EU to table 'climate taxonomy', leaving gas and nuclear for later," https://www.euractiv.com/section/energy-environment/news/leak-eu-to-table-climate-taxonomy-leaving-gas-and-nuclear-for-later/(검색일: 2021. 5. 19).
13) JRC(Joint Research Centre, 2021), Technical assessment of nuclear energy with respect to the 'do no significant harm' criteria of Regulation (EU) 020/852.
14) Euractiv(2021. 3. 23), "EU to offer gas plants a green finance label, under certain conditions," https://www.euractiv.com/section/energy-environment/news/eu-to-offer-gas-plants-a-green-finance-label-under-certain-conditions/(검색일: 2021. 5. 19).